

아산시, 전국 최초 무연고 기초 생활수급자 장례지원 조례 제정

전병관 | 아산시청 복지행정팀장

1. 들어가며

죽음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은 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장례는 공동체의 사회적 의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가족이나 공동체가 아닌 전문 장례식장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전문화된 장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문제로 전문 장례식장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장례문화에 의한 처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례처리의 주 대상인 홀몸노인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충남 아산시에서는 소외계층인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한 장례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아산시의 장례지원 실태 및 현황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에서 지원되는 장례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례급여 50만원,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장례비 50

만원,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행려사망자에게 지원되는 장례비 80만원과 무연고사망자에게 지원되는 장례비 80만원 등이 있다.

〈표 1〉 아산시 장례지원 현황

관련 법령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만원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50만원
내부 지침	행려 사망자	80만원
내부 지침	무연고 사망자	80만원

이 중 행려 사망자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아산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에 오랫동안 가족 없이 지내다 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제급여 50만원으로는 염습 및 안치 등의 기본적인 장례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분 이통장 등의 도움으로 어렵게 장례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홀몸노인으로 2009년 13명, 2010년 15명, 2011년 11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장례지원 제도화를 위한 아산시 조례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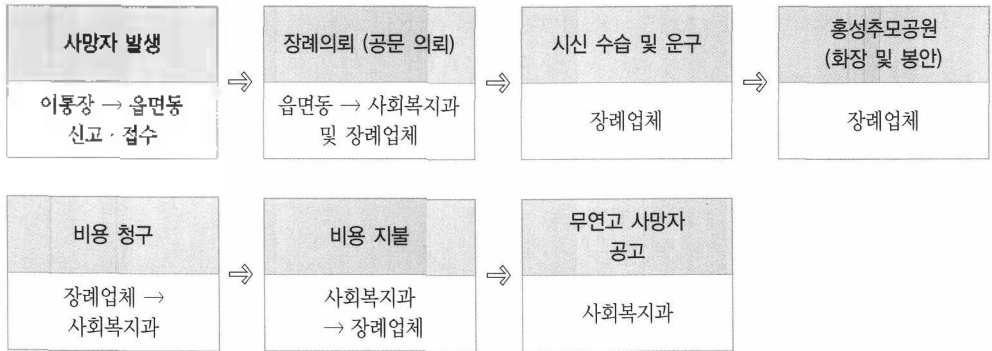
아산시에서는 장례지원의 제도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6024호, 1999. 9. 7 제정, 2000. 10. 1 시행)」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41호, 2011. 5. 30 국가장법 개정, 2011. 8. 31 시행)」 등 관련 법률의 검토와 조례의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제1038호, 2011. 12. 15 제정, 2012. 1. 1 시행)」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총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이 없어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에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평안하게 보내드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휴먼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장례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제급여 50만원에 염습비, 안치료, 화장비, 납골비, 영구차 사용료, 기타 재료비 등 13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86만원으로 장례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원절차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가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시청 사회복지과 및 장례업체에게 공문을 의뢰하여 사망자를 처리하고, 절차 완료 후에는 장례비 지원 및 사망자 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2>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절차



4. 다양한 소외계층에 확대하는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의 주체가 되려면 일정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례의 제정권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소외계층인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례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과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가적 제도와 법을 보완하며 다른 지자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소외계층에게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록〉 조례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망 시 일정기간 화장하여 봉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2. “무연고자”란 제1호 각 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사망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보호받던 중 사망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실시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례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그 밖에 장례와 관련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리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10년이상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화장 등의 장례절차를 관내 장례대행업체에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례를 처리한 업체는 시장에게 장례에 소요된 경비를 별지 서식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청구서를 작성·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구된 내역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매장 및 화장의 방법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